

의안번호	2211813
의 퇴 인	김예지의원
회 답 일	2025. 8. 28.
추계번호	25C4093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6(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)	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관할 지역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함(제1항 본문) 다만, 24시간 연중 무휴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관할 지역에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(제1항 단서)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시설·인력·운영 등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6(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지자체장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 의무화(안 제11조의6)
 -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, 그에 따라 지역별로 추가적으로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는 경우 그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설치·운영 의무에서 제외되는 “관할지역에 아이돌봄센터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”가 어떤 경우인지 불분명하고, 설치 및 시설·인력·운영 등의 기준 또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여성가족부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돌봄 지원은 돌봄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가 아이돌봄서비스로, 통상적으로 지자체 및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내 돌봄서비스는 「아동복지법」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

□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